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비기술교육 비용 지원 등〉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45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 목 차

|                                             |   |
|---------------------------------------------|---|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45호)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3 |
| 1. 정비기술교육 비용 지원 등(안 제64조의2제5항·제6항 신설) ..... | 3 |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45호)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10.
3. 회 부 일 : 2026. 4. 1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의 기술 변화에 맞추어 고전원전기 장치 등을 정비할 정비기술인력에 대해 정비 교육을 제도화하고, 공공 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신기술 적용 자동차의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생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고가의 특수 안전장비 구입 비용 문제로 인해 자발적인 정비 교육 참여와 시설 개선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임.

자동차 정비는 단순한 개인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적 영역으로, 국가 주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새로운 안전 위협으로부터 자동차정비업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안전 관리 역량을 확보한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는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의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계의 공정한 산업 전환을 돕고 국민의 안전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 2제5항 및 제6항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정비기술교육 비용 지원 등(안 제64조의2제5항·제6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비기술교육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정비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한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① ~ ④ (생략)<br><u>&lt;신설&gt;</u><br><br><br><br><br><br><br><br><br><br><u>&lt;신설&gt;</u> |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등) ① ~ ④<br>(현행과 같음)<br><u>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기술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br><br><u>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u><br><br>부 칙<br><br>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64조의2<sup>1)</sup>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책임자 등 정비기술인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함)을 받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또한, 현행 제69조의3<sup>2)</sup>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함)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조합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자동차관리법」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정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년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89만 9,101대로 2021년 23만 1,443대에 비해 약 3.9배 증가하였고, 수소전기자동차는 2025년 4만 4,655대로 2021년 1만 9,404대에 비해 약 2.3배 증가하는 등 고전원전기장치<sup>3)</sup>를 장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sup>4)</sup>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장비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전기차 등 보급 현황>

(단위: 대)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전기자동차   | 231,443 | 389,855 | 543,900 | 684,244 | 899,101 |
| 수소전기자동차 | 19,404  | 29,623  | 34,258  | 37,930  | 44,655  |

자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제출자료)

3) “고전원전기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서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 정비업계는 상당수가 소수 인원이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sup>5)</sup>,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2025년 2월 기준 전국 자동차정비업체 3만 6,170개소 중 전기자동차 정비가 가능한 업체는 2,954개소(8.2%)<sup>6)</sup>에 불과하여 전기자동차 정비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기자동차 정비가 가능한 업체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전기자동차 정비기술교육이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sup>7)</sup>, 영세한 정비사업자의 경우 교육 참여 기간 중 영업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교육 참여에 한계가 있고, 전기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데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임.

한편,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가 감전, 화재 등 중대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정비하기 위한 전문교육 이수, 시설 개선 및 안전장비 구비에 대한 법적 지원

---

5) 자동차정비업 등록업체 및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자동차정비업체는 종합정비 4,472개소(종사자 35,332명), 소형종합정비 2,218개소(13,007명), 전문정비 29,234개소(42,338명), 원동기전문정비 260개소(810명)로, 전체 자동차정비업 등록업체의 대부분이 소수 인원(전문정비 평균 1.4명, 원동기전문정비 평균 3.1명)으로 운영되는 전문정비 및 소형 업체로 정비업계가 대체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6)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로부터 취합한 자료임(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7) 신문기사, 「고전압 전기차 대중화 시대, 정비소는 아직도 무법지대」, 전기신문, 2025.5.20일자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현행 제64조의2는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기술교육의 실시 및 전문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sup>8)</sup>,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 제69조의3은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의 수립·추진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조합 및 대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별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시설·장비 비용지원 근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정비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한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는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보조금 지급<sup>9)</sup>,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sup>10)</sup> 등

---

8) 2026년 현재 전문교육기관으로 7곳이 지정되어 있음(영남이공대학교, 중부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강원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동서울대학교)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의 정책 수단을 통해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수요 증가와 안전 위험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개별 정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국가 주도의 산업 전환 정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자동차 정비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영역으로, 특히 고전원전기장치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할 경우 감전,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정비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개별 사업자의 이익 차원을 넘어 국민 안전 보호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 확대에 비해 정비 인프라가 부족하고, 영세한 정비사업자가 시설·장비 투자 및 교육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현행 제69조의3을 근거로 다수 지방자치단체(광역시 16곳, 기초 59곳)는 자동차정비업 지원 관련 조례를 정하고 있음.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교육 등 조례 제정 예시>

| 조례명                                          | 관련조항                                                                                                                                                                                                                                           |
|----------------------------------------------|------------------------------------------------------------------------------------------------------------------------------------------------------------------------------------------------------------------------------------------------|
| 경기도<br>자동차정비업<br>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br>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br>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br>3.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
| 울산광역시<br>자동차정비업<br>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br>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br>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br>3.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
| 서울특별시<br>환경친화적 자동차<br>정비산업 육성 및<br>지원에 관한 조례 |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br>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br>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경영안전진단, 개선을 위한 상담지원<br>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 개선<br>4. 환경친화적 자동차 검사·정비 기반시설 구축 |
| 가평군<br>자동차정비업<br>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br>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br>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                                                                                                    |
| 동해시<br>친환경자동차<br>정비업 지원에<br>관한 조례            |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br>1. 친환경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를 위한 시설개선<br>2. 친환경자동차의 정비인력 양성 및 종사자 기술교육<br>3.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개정안은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대상을 ‘정비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자 본인이 직접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이에 1인 사업자와 같이 기술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사

업자 본인이 직접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 국토교통부 의견

친환경·첨단차 보급 확대에 따라, 자동차 정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기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술인력의 고용 촉진 등을 위하여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현행 법령<sup>11)</sup>에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지원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많은 지자체가 이미 조례를 정하고 있어,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
| 문 의 처        |
| 02)6788-5575 |

---

11)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3 ① 자동차 정비분야 인력의 육성 및 관리 시책 수립·추진 가능 ③ 국토부 또는 시·도지사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조합 및 대학 등 지원 가능

##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정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법 제69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지원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조합등 및 대학 등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참고2

## 기술교육 비용지원 관련 유사 입법례

| 법률명                     | 관련조항                                                                                                                                                                                                                                              |
|-------------------------|---------------------------------------------------------------------------------------------------------------------------------------------------------------------------------------------------------------------------------------------------|
| 자동차관리법<br>(19.11.26 신설) |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br><br>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건설기술진흥법                 |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br><br>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뿌리산업법                   |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br><br>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에너지이용<br>합리화법           |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②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br><br>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정보통신산업법                 |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br><br>3. 전문인력의 양성                                                                                                              |